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
1.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번호 정비(제3조제1항제1호·제2호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국제공통 품목번호 기준과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원활한 통관 및 관세·무역 통계업무 지원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(제30조제4항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수리·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물품을 일시수출입하는 기업의 관세부담 경감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(제10조제12항·제13항 신설, 제13조제1항
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제1항 단서, 제18조제1항 단서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·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소명서를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간소화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편의 제고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(제11조제11항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신청일 이후 서면·현지조사를 거부, 서류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 제고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원산지증명서 관련규정 정비(제7조제1항·제2항, 제8조제3항, 별표18, 별지 제10호, 제15호 서식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방식,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,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 현행화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자유무역협정(FTA)의 집행상 혼선 방지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